

제314회 임시회
2012. 9. 21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이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 9. 21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8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2년 9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2012년 9월 11일

-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변혜정 여성정책관)

가. 제안이유

- 아동·여성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아동·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기반마련
-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·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역연대 운영협의회의 설치·운영

나. 주요내용

-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설치(안 제4조)
- 협의회의 구성(안 제5조)
 - 위원장(당연직 : 행정부지사) 포함 20명 이내
- 협의회의 기능(안 제7조)
-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: 홍범희)

- 동 조례안은 '12. 3. 2. 여성가족부로부터 「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」 평가계획 및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,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·여성에 대한 폭력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제5조 협의회의 구성시 여성정책관이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7. 수정안 요지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2. 9. 11, 노광기 의원

○ 수정이유

- 협의회에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여성정책관을 참여시키기 위함.

○ 주요 수정내용

- 안 제5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위원은 아동·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추천 받은 사람(이하 “추천인”이라 한다)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여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”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위원은 아동·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추천 받은 사람(이하 “추천인”이라 한다)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여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”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은 아동·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추천 받은 사람(이하 "추천인"이라 한다)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충청북도의회 의원 2.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피해자 등 여성권의 관련시설·단체에서의 추천인 3. 아동보호관련 시설·기관에서의 추천인 4. 청소년상담지원시설·기관에서의 추천인 5. 긴급 또는 응급구조 등 의료기관에서의 추천인 6. 아동·여성·청소년 관련 학과 대학 교수 7.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청에서의 추천인 8. 경찰, 검찰, 법원 등 사법 관련 기관에서의 추천인 9. 그 밖에 아동·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	<p>제5조(협의회의 구성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은 아동·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추천 받은 사람(이하 "추천인"이라 한다)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여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9. (제정안과 같음)

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등 범죄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아동·여성폭력”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등을 말한다.
3. “피해자”란 아동·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피해 예방·보호·치료를(이하 "예방·보호·치료"라 한다) 위하여 필요한 행·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2. 예방·보호·치료를 위한 관련시설, 의료·교육·법률·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예방·보호·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
2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
3.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예방·보호·치료를 위한 정보의 지속적인 관리로 폭력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·단체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역연대 운영협의회 설치) 도지사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추진과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
다만, 효율적인 협의회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아동·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추천 받은 사람(이하 "추천인"이라 한다)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여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충청북도의회 의원
2.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피해자 등 여성권익 관련시설·단체에서의 추천인
3. 아동보호관련 시설·기관에서의 추천인
4. 청소년상담지원시설·기관에서의 추천인
5. 긴급 또는 응급구조 등 의료기관에서의 추천인
6. 아동·여성·청소년 관련 학과 대학 교수
7.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청에서의 추천인
8. 경찰, 검찰, 법원 등 사법 관련기관에서의 추천인
9. 그 밖에 아동·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당연직으로 한다.

④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, 공동위원장은 민간단체 추천인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⑥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아동·여성보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인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공동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궐위사유로 재위촉한 경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·조정하여 운영한다.

1. 아동·여성 보호·치료 등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책마련
2. 아동·여성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

3. 아동·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전개
4.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·단체에서 제시한 아동·여성안전 관련 지역현안 해결 사업
5. 그 밖에 아동·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협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④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추천한 해당 기관·단체의 실무전문가로 하여금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회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겸임한다.

제10조(실무협의회의 업무)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협의회에서 협의·결정한 사업의 구체적 집행관리
2. 협의회에서 협의·결정할 사항을 사전검토
3. 위기 아동·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방안 협의
4. 그 밖에 관련사업의 추진사항 협의

제11조(사업비의 지원) 도지사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13조(실비보상)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

계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충청북도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협의회 회의록

개최일시	
장 소	
참 석 자	
회의안건	
회의내용	
기 타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

1. 사업개요

-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회의비
-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회의비 및 폭력예방 사업비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지난 3년간('09~'11년) 사업비를 기초로 산출

나. 추계 결과

-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회의비 및 폭력예방 사업 : 연7,2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범죄피해자보호기금(여성가족부) 50%, 도비 5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여성정책관 변혜정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2년)	2차년도 (2013년)	3차년도 (2014년)	4차년도 (2015년)	5차년도 (2016년)	계
세 입	3,600	3,600	3,600	3,600	3,600	18,000
아동여성폭력 방지 지역연대운영	3,600	3,600	3,600	3,600	3,600	18,000
세 출	7,200	7,200	7,200	7,200	7,200	36,000
아동여성폭력 방지 지역연대운영	7,200	7,200	7,200	7,200	7,200	36,000
재원 조달	7,200	7,200	7,200	7,200	7,200	36,000
의 존 재 원	소 계	3,600	3,600	3,600	3,600	18,000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 세					
	범죄피해 보호기금	3,600	3,600	3,600	3,600	18,000
자 채 수 입	소 계	3,600	3,600	3,600	3,600	18,000
	지방세	3,600	3,600	3,600	3,600	18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특별회계						
특별회계						
시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 만자 예비비등)						

관계법령 발취

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,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4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
5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(經費)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
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(이하 "성매매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2.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(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)의 설치·운영

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, 아동·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, 범죄 조사·연구, 국제사법 공조,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.